

# 기안 용 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상공 28282-11	전화: 750-8354	서울특별시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중영구 10.5 ③ 1.	시 장	
수신처 보존기간	2년		
시행일자	'91. 3. 3		
보조 기 관	부 서 장 상공국장		
기안책임자	김재권	협조 기 관	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경유 수신 참조	국 안 참 조		
제 목	'91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 지원기		
(제 1 안) 내부결재			
1. '90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 회수금과 '91 중소기업육성기금('91예산)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와 동조예 시행규칙에 의거 우리시 소재			
중소제조업체에 용자지원 아고자 별첨과 같이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중소기업육성에			
연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첨부 : 1) '9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지원 계획서 1부.			
2) 공고(안) 1부. 끝.			
(제 2 안)			
수신 : 수신처 참조			

공인된 문서입니다

장르 : 산업국장

제목 : '91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수립

1. 우역시 소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하고자 별첨과 같이 융자지원 계획을 수립 하였으니,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심사 및 운용조례, 동시영규칙의 융자대상 선정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제안 구비서류 검토후 복명시 작성 '91. 4. / 까지 추천할 것이며,

2. 중소기업육성 기금융자 대상자 추천시 복명시 작성 및 제안구비서류 누락으로 보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공행영연구원 지침에 따라 구보규제 및 관련단체, 대상업체에 통보하는등 용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첨부 : 1) '9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서 1부.

2) 공고(안) 1부. 끝.

수신처: 시구 1 - 22

(계 3 안) 17K

수신 : 공보관

발신 : 산업경제국장

제목 : 시보규제 요청

1. 우역시 '91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별첨과 같이 공고 하고자 공고(안)을 송부하였으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고(안) 1부. 끝.

(계 4 안)

서울특별시 산업경제국



수신 : 중소기업진흥포럼중앙회장

참조 : 서울지회장

제목 : '9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통보

1. 우러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별첨과 같이 통보  
어오니,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진흥포럼에 통보하여 많은 업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계획서 1부. 끝.

원본대조필



## '9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조건

### (사업 개요)

#### 1. 목 적

우려사 소재 중소기업체에 자금(융도 - 시설 및 인건, 기술개발)을 용자지원하여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 2. 근거규정

- 중소기업기본법, 지방자치법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 위 조례 시행규칙

#### 3. 기금조성

○ 총 3,958억단원('91.1.31현재)

- 시비출연 : 1,720억단원('65 - '90)
- 중식이자 : 1,238억단원
- '91예산액 : 1,000억단원

#### 4. 용자대상 (시행규칙 제3조)

- 공장등록을 필요로 하는 준공업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체
- \* 저소득 시민에게 부업제공 및 동원물자 생산업체는 일반지역 가능

#### 5. 기금운용 및 용자조건

- 중소기업은행에 대차(년리 7%) - 책임운영
- 대출 - 년리 8%, 1년거치 2년근동분할상환
- 업체당 최고 50억단원 까지

## 6. 용자지원금기

0 저점사담(시→구) → 용자대상 희망업체 추천(구→시) → 대상심사  
(기금운용위원회 - 위원장 : 산업경제국장) → 용자대상자 선정(용자  
지원가능의 범위내 업체수 결정) → 용자업체 선정통보(시→중소기업  
은행) → 용자소속우 자금수령(신청업체 ↔ 중소기업은행)

### ( '91 용자지원 세부내역 )

1. 용자지원가능액 ..... 1,618백만원('91.1.31 현재)

0 기금조성총액 ..... 3,958 "

0 대출중연금액 ..... 2,340 "

0 잔 액 ..... 1,618 "

[ 회수금및이자 ..... 618 "

'91 예산 ..... 1,000 "

. 업체당 50백만원씩 지원기준 32개업체 지원가능

### 2. 기금의 대가

0 대가금액 : '91예산 1,000백만원

0 대가금융기관 : 중소기업은행

0 대가기간 : 대가 이자결산시 까지로 하고 기간종료와 동시 재대가

0 대가이자 : 년리 7%

0 대가금 이자 및 결산처리

- 6월30일과 12월31일 부로 이자결산하고 이자도 원금에 합산하여 재대가

### 3. 용자추천 지침서담 (시 — 구)

본계회사 내직 화적우 서담

**4. 용자신청 및 추천(중소기업에 국한)**

가. 신청기간(일) : '91. 3. - 3.

나. 용자대상(조세시행규칙 제3조 해당자)

1) 관할구청에 공장등록을 할안자

2) 존공업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자(단, 저소득시민에게 부업을 제공하거나 소득증대 사업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자 또는 동원물자 생산업체는 그외까지 없음)

3) 공예대출시설 설치자가 대상자는 당해자가 필자

다. 용자신청 및 추천(조세시행규칙 제3조)

1) 구비서류(일체)

0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추천 신청서(소정양식)

0 사업계획서(소정양식)

0 공장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0 공예대출시설 허가증(허가대상 업체에 한함)

0 건축물 권역대장 및 토지대장 등본

0 생산실적 또는 수출안표를 증명하는 서류

0 협동조합 가입확인서(가입업체에 한함)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

0 일체(공장)소재지 관할구청 산업과

**5. 용자대상 선정**

0 금회선정 총 업체수 42개업체 내의

- 용자지원 가능액(1,618억단위) 해당업체 : 32개업체

- 신청업체가 많을경우 '91.2 - 12월까지 기간도래 대출외수금 및 증식  
이자 예상총액 453억단위(외수금 : 335억단위, 증식이자 : 118억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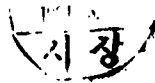
으로 용자지원 할 수 있도록 예비업체로 10개업체 선정

0 내상신청(포기 제외)

- 서울특별시 중 기업성장기금 운용위원회(위원장 - 김재민)에서 심의  
후 신청함

6. 행정사항

- 0 관내 중소기업에 널리 홍보 공개행정 구현
  - 시보 및 구보제(법정공고안), 보도자료 제출
- 0 구청장은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 누락 확인하고, 복명서 작성에 따른 시행규칙 제3조 해당여부 기록철거
- 0 신청업체의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등)을 판단하여 금융기관에서 담보능력 부족으로 인한 여대출 사례 방지
- 0 중소기업은행 각지점중 신청업체가 거래하는 지점, 거래지점이 없을경우 업체에 가까운 지점을 선정 신청서 여단에 기록추천
- 0 용적받은 업체의 사무관리 철저



서울특별시 공고 제 5/호

부  
1991. 3. 30

'91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지원정책공고

서울특별시 소재 유망 중소기업업체의 시설 및 운전, 기술개발 자금을 융자지원  
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991. 3 .

서울특별시장

1. 융자대상 및 융자조건등

가. 융자대상

- 1) 관할구청에 공장등록을 필한자
- 2) 준공업지역에서 제조업 영위자(다만, 저소득 시민에게 부업을 제공  
하거나 소득중대 사업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자 또는 동원물자 생산  
업체로 지정받은자는 그러하지 않음)
- 3) 공예·예술·시설 설치업이 대상자는 이가를 받은자

나. 융자조건등

- 1) 자금의 용도 : 시설, 운전, 기술개발자금
- 2) 융자한도액 : 업체당 50,000,000원 이내
- 3) 금리 : 년리 8%
- 4) 상환기간 : 3년(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2. 융자신청기간 및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배부 및 접수기간 : '91. 3. // - '91. 3. 30.



나. 장소 : 업체 관할구청 산업과

다. 용역신청서 구비서류

- 1)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역추천 신청서 (소정양식)
- 2) 사업계획서(소정양식)
- 3) 공장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4) 공역매출시설 허가증 사본 (허가대상 업체에 한함)
- 5) 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대장등본
- 6) 생산실적 또는 수출원표를 증명하는 서류
- 7) 업종조합가입확인서(기업입체에 한함)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청 상공과(전화 750-8351-6) 또는 업체 관할구청 산업과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